

# 인지세 납부 안내문

## ■ 인지세 안내(인지세 미납부시 계약불가)

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「인지세법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'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'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. 이에, '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' 계약예정자께서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1/2 금액을 부담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시어 공급계약 체결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미첨부 시에는 공급계약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■ 인지세 과세 대상과 납부기한·방법

과세대상	부동산 분양계약서(전매시 분양권 전매계약서)				
납부기한	공급계약 - 공급계약 체결일(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)의 다음달 10일 ※ 분양권 전매시에는 분양권 전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야 함.				
구입처	- 인터넷 구매 : www.e-revenuestamp.or.kr (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) - 방문 구매시 : 우체국 및 은행 (현금납부만 가능)				
납부세액	주택형	과세기준	인지세액	사업주체 부담	계약자 부담
	49A, 49B, 59A, 59B, 75(2, 3층) 75(4층 이상), 84A, 84B, T84A~D	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	15만원 35만원	7만 5천원 17만 5천원	7만 5천원 17만 5천원

※ 최초 공급계약시 인지세 납부주체는 '사업주체'와 '계약자'이며, 분양권 전매시 납부주체는 '매수자'와 '매도자'입니다.

## ■ 온라인 구입 안내

**1**

전자수입인지

네이버 및 그 외 포털사이트에 '전자수입인지' 검색  
www.e-revenuestamp.or.kr

**2**

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**3**

비회원서비스 or 회원 로그인 후 구매 버튼 클릭

**4**

용도	과세문서 종류	금액	건수	합계금액	
1	인지세 납부	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	75,000원	1	75,000원
3	선택		0		
4	선택		0		
5	선택		0		

용도	과세문서 종류	인지세액	건수	비고
인지세 납부	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	75,000원	1건	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
		175,000원	1건	

**5**

출력 후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  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재발행 불가)

## ■ 오프라인 구입 안내

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

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  
※ 용도 : 인지세납부 / 금액 : 7만5천원 1매

결제 및 전자수입인지 발급  
※ 현금납부만 가능.  
발급 후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

※ 분양계약자께서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공급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 
※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할 경우 인지세 미납으로 간주되오니 분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